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 안 경 위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의안번호 : 제 322 호
- 다. 제출일자 : 2003. 9. 26
- 라. 회부일자 : 2003. 9. 29

2. 제 안 사 유

- 자원회수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의 주변영향 지역 주민에게 난방비를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을 시설의 가동률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변경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 요 골 자

- 가. 자원회수시설의 주변영향지역 주민에게 난방비를 균등하게 50% 지원하던 것을 당해 자원회수시설의 가동률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원하도록 함.
- 가동률 75%초과 : 난방비의 70% 지원
- 가동률 75%이하 50%초과 : 난방비의 60% 지원
- 가동률 50%이하 : 난방비의 50%지원
- 가동률 0% : 지원하지 않음.
- 나.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재원에 “자원회수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다른 자치구의 출연금”을 추가함. (안 제2조제1항제2호)
- 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직명 및 부서명칭을 정비함. (안제6조)
- 라. 주민지원기금운용협의회의 정기회의 개최주기를 반기별 1회에서 연 1회로 조정하고, 의결 정족수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에서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변경함.
(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

4. 참 고 사 항

- 가. 관계법령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8조 및 제21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 - 별첨
- 나. 예산조치 : 주민지원기금출연금에 관하여 예산담당관과 협의
- 다. 기타
 - (1) 개정조례 전문 : 별 첨
 - (2) 입법예고(2003. 8. 25 ~ 2003. 9. 14) 결과 : 의견별첨
 -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규제사무 없음

5. 입법예고 의견종합

- 양천구 한신청구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 난방비 차등지원과 다른 자치구 출연금은 타 구 쓰레기 반입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며
 - 기금운용협의회 개최횟수 축소 및 의결정족수를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변경하는 것도 합리적임.
- 일원동 환경대책위원장(1,798명 서명)
 - 과다용량 건설로 인한 운영적자를 구민에게 전가하는 것이고, 개정 이전에 주변영향 지역 확대, 다이옥신 연속측정, 지역주민의 심리적, 건강,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하며
 - 개정을 강행할 경우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며 지역주민의 저항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

- 마포구
 - 중구·용산구에서 받은 출연금이 개정조례에 따라 기금에 수용되어 주민 복지사업에 쓰이기 어려움
- 마포 쓰레기소각장 건설저지 대책위원회
 - 마포자원회수시설은 광역시설임에도 서울시 출연금이 없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됨
 - 난방비 지원비율에 있어 서울시의 원인 제공으로 가동중단 또는 가동률이 낮아졌을 경우의 지원비율을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부당함.
-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 개최주기를 축소(반기별 1회 → 연 1회)할 경우 심도있는 논의에 도움이 되지 않음.

6. 자원회수시설 관련 현황

<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현황 >

- 근 거 : 폐촉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 제20조
- 지정절차 : 전문연구기관 선정 → 환경상 영향조사 실시 → 환경상 영향조사 실시 결과 통지 → 주변영향 지역 결정 협의 → 주변영향 지역 결정고시
- 결정일 : 3개시설 1996. 5. 16
- 지정현황
 - 노 원 : 6,190세대, 346,507m²
 - 양 천 : 3,413세대, 231,200m²
 - 강 남 : 2,934세대, 90,315m²

< 주민지원협의체 구성현황 >

- 근 거 : 폐촉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별표 2]
- 기준
 - 정원 : 15인 이내
 - 구성방법 : 서울시가 관할 구청장 및 구의회와 협의구성
 - 구성원 : 주민대표가 과반수 되도록 구성
 - 당해 시설소재 구의회 의원
 - 구의회가 선정한 주민대표
 -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
- 위촉절차 : 구의회, 주민대표 대상자 선정 → 서울시에서 위촉
- 구성현황
 - 양천주민 지원협의체 : 2003. 6. 7 구성 10명
 - 노원주민 지원협의체 : 2003. 7. 11 구성 7명
 - 강남주민 지원협의체 : 2003. 3. 30 구성 7명

<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지원현황(1996~2003. 8) >

- 기금지원

(단위: 백만 원)

시설별	대상세대	기금조성	지원액	잔액
계	12,537	25,596	20,891	4,705
양천	3,413	9,675	8,748	927
노원	6,190	11,056	10,723	333
강남	2,934	4,865	1,420	3,445

- 주민편의시설 설치지원

시설별	시설개요			주민이용 연인원 (2002년)	운영프로그램
	개관일	사업비	연면적		
양천	99. 9. 1	81억 원	1,186평	346,450	수영, 헬스, 에어로빅, 발레, 댄스, 유아체능, 독서실, 문화사업, 청소년상담, 영화, 연극 등
노원	98. 1. 3	87억 원	2,160평	784,000	
강남	01. 1. 28	94억 원	1,970평	773,206	

7. 세부내역

-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회수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현재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시설주변 영향지역 주민 난방비를 시설 가동률의 고저에 따라 차등지원하도록 하고 기타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써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먼저 안 제2조(기금의 조성) 제1항 제1호 나목관련 별표 1의 주변영향지역내 주택에 대한 지역난방비 지원금 출연요율에 대하여 현재 일괄적으로 50%로 되어 있던 것을 자원회수시설 운영실적에 따라 가동률 0%시 → 0% 지원, 50%이하시 → 50%, 75%이하 50%초과시 → 60%, 75%초과시 → 70%로 변경한 것은 주변영향지역내 주택의 난방비 지원율을 높임으로써 간접적으로 시설의 가동률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로 판단되며, 시설의 광역화 결과로 가동률이 향상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난방지원액을 늘리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공적적이라 할 것임.
- 안 제2조(기금의 조성) 제1항 제1호 다목 및 별표 2의 “반입폐기물 수수료”를 “폐기물반입 수수료”로, 라목의 “타구 폐기물반입 수수료의 가산금”을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폐촉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반입수수료 가산금”으로 한 것은 용어사용을 타조례와 일치시키고, 가산금에 대한 정의를 폐촉법에 따라 명확히 한 것이며,

안 제2조 제1항 제2호 “자원회수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다른 자치구의 출연금”을 신설한 것은 1999. 2. 8 개정된 폐촉법 제21조제2항제5호의 주민지원기금 조성항목에 추가된 내용을 조례에 명시한 것임.

- 안 제6조(협의회 구성) 제1항의 “환경관리실장”을 “환경국장”으로 “폐기물 시설과장”을 “청소과장”으로 한 것과 제2항의 “폐기물시설과 시설운영담당사무관”을 “청소과 협의회사무담당사무관”으로 한 것은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2003. 1. 10)에 따른 당연조치 사항이며
- 안 제8조 제2항의 주민지원기금 운영협의회의 정기회의 개최주기를 “반기별 1회”에서 “연 1회”로 조정하고, 제3항의 의결정족수를 “전원” 찬성에서 “3분의 2이상”으로 한 것은 연 2회 개최에 따른 주민들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일부 주민지원 협의체에서 만장일치의 불합리성을 지적하였으므로 의결정족수를 합리적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8.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동 조례안은 2003. 9. 26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22호로 2003. 9. 29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의 개정사유는 자원회수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의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에게 난방비를 일률적으로 지원하였던 것을 시설의 가동률에 따라 차등지원하도록 변경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은 주요 사안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 조례안 제2조(기금의 조성)별표 1에 대한 의견입니다. 자원회수시설의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에게 난방비를 50%씩 균등하게 지원하던 것을 자원회수시설의 가동률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 별표 1 >

자원회수시설 가동률	75%초과	75%이하~50%초과	50%이하	0%
지원금 출연요율	70%	60%	50%	0%

이는 자원회수시설의 가동률이 높아지면 난방비 지원율을 연동하여 높여줌으로써 영향지역 주민들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주고 가동률은 높아져 자원회수시설의 효율화와 합리화를 기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긍정적이라 사료됩니다.

둘째, 동 조례 제2조(기금의 조성) 제1항 제2호에서 “자원회수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다른 자치구의 출연금”을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상위법인 폐촉법의 개정(1999. 2. 8)에 따라 신설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상위법이 개정된 지 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조례에 반영한 것은 문제가 있다 할 것이며 이번에 제출된 4건의 조례개정안이 모두가 이런 상태이므로 차후에는 이러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환경국소관 조례에 대하여 상위법과의 관계,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을 파악하여 서로 상충되거나 직제개정으로 인하여 명칭이 변경되었거나 용어 등 기타 자구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모두 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의안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의견입니다.

조례안, 예산안, 결산안 등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의규칙 제18조(의안의 제출, 발의)제2항에 의거 회기시작 10일전까지 제출토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환경국에서 4건의 조례안을 제출하였는데 모두 목전에 찬 10일전에야 제출되었으며 우리위원회에는 9. 29자로 회부되어 공휴일을 제외하면 5일전에 회부된 것입니다.

생각컨대 이와 같은 의안들이 입안되면 우리위원회 위원님께 그에 대한 사유와 당위성 등을 설명드리고 이해하시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각 과별, 팀별, 담당별로 몇 개월씩 준비하고 검토하여 제출된 의안들을 단 몇 일만에 검토와 심사를 심도있게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차후 의안 제출시에는 조례규칙 심의전에 위원님과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며 아울러 의안과 관련된 자료 등도 형식적으로 제출하는 것보다는 정말 검토와 심사에 도움되는 충분하고 성의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늦게나마 검토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노원소각장 가동중지와 다이옥신 검사결과 조작발표 책임자 처벌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청원 소개의원 의견서